

2024년 「유망기술 제품화지원사업」 공고

既개발·휴면 상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로봇전문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 유망기술 제품화지원사업」의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4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既개발·휴면 상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제품화 패키지 지원을 통한 로봇전문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우수 로봇 연구개발 결과(既개발·휴면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품화 패키지 선택적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제품화 패키지	- 시제품제작	시제품 및 금형제작 中 1개 이상 선택 필수
	- 금형제작	
	- 성능평가	필수
	- 설계 검증·해석	선택
투자상담회	- '로봇 스타트업 육성 및 IR지원사업' 연계 투자상담회	선택

- (상세 지원내용) 제품화 패키지 상세 내용 및 신청 안내

No	지원내용	상세내용	국비지원금	비고
1	시제품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디자인 후, 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초기모델을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지원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50,000천원 이내 (성능평가는 3,000천원 이내 포함)	시제품 및 금형제작 중 1개 이상 선택 필수
2	금형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을 위해 제품의 금속 주형(틀)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지원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3	성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성능 달성 및 안전성 등 신뢰도를 제품 판매 전 검증을 위해 성능평가비 지원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후 시험성적서 제출 		
4	설계 검증·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설계도를 설계 사전 검증하는 것으로 구조/성형해석, 시뮬레이션 등 설계검증비 지원 * 검증해석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해석 후 결과레포트 제출 	선택 시 국비지원금 1,000천원 이내	선택
5	투자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과 투자자 간 1:1매칭 투자상담회 지원 * '로봇 스타트업 육성 및 IR지원사업' 연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관기관 중 희망기업 대상으로 1:1 매칭 투자상담회 지원 	기업부담 없음	선택

※ **시제품/금형제작(필수)** : 기개발 완료되어 상용화 가능한 **부품 및 부분품도 제품화** 가능하며, 기존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 **성능평가(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에 있으며,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평가 목표(SPEC) 제시**

□ 지원 규모

- (지원규모 및 금액) 8개 내외 기업 지원,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총 사업비의 50% 이내	총 사업비의 50% 이상(현금부담 50% 이상)
[예시] 총사업비 100,000천원 중 정부출연금 50,000천원	[예시] 총사업비 100,000천원 중 민간부담금 50,000천원(현금 25,000천원 이상)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4. 11. 30. (약 7개월)
- (사업비 사용 및 지급기준) 사업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금액 결정
 -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직접비는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성능평가비, 설계검증·해석비, 정산수수료*만 사용가능
 - * 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기관이 책정한 정산수수료에 따르며,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 실시
 - 장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사업계획서상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정부지원금 100% 지급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CMS)를 통해 집행 및 관리 예정이며,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3. 지원대상 및 선정제외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지원요건	추진체계
로봇제조를 위한 로봇제품 및 부품의 “설계도면”(제품기획서 포함) 보유	주관은 기업만 가능

- (유의사항) 사업기간 만료일인 '24년 11월 30일까지 로봇 제작 및 성능평가 성적서 발급 등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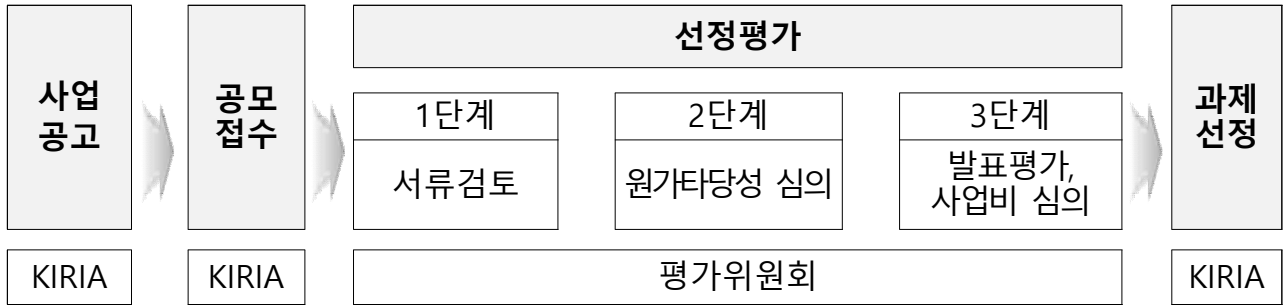
□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국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최근 3년('21년~'23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전제외대상 및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제외)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4. 선정 절차



5.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선정

○ (평가방법)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사업화 및 로봇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절차) 서류검토 · 원가타당성 심의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서류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원가타당성 심의 :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검토를 통한 제작비 검증

- 발표평가 : 기술성, 사업수행 역량 등 평가 및 최종 지원금액 심의

* 과제 총괄책임자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 (최종선정)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최종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

□ 평가기준

○ (평가기준) 기술성 및 사업 타당성,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기술성 (35)	우수성	○ 제품화 관련 기술의 우수성	20
	적정성	○ 제품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15
사업 타당성 (35)	성공가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15
	마케팅	○ 판매 전략 및 투자계획	10
	기대효과	○ 고용 창출 및 매출 증대 등 기대효과	10
수행능력 (30)	완성도	○ 제품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15
	사업비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15
합 계			100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점수 반영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4. 2. 14(수) ~ '24. 3. 14(목) 18:00까지

○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게시

* 진흥원 홈페이지 : www.kiria.org / 사업관리시스템 : www.kiria.org/pms

□ (접수기간) '24. 2. 28(수) ~ '24. 3. 14(목) 16:00까지

※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에는 사업관리시스템(PMS)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 온라인 접수 마감 시간까지 접수 완료 및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단, 시스템 오류로 마감 시간까지 접수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 **접수 기한 내 제출 서류 및 시스템 오류 증빙(화면캡처)**을 담당간사 이메일로 제출시 인정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제반 서류 제출

○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 신청(오프라인 제출 불가)

- 온라인 과제 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 「과제신청」의 각 항목 입력 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 신청 후 담당간사 연락(전화 or '전산접수증' PDF파일 메일제출)을 통한 접수 확인

○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된 서류 일체는 사업 선정 시 원본 제출 예정이므로 별도 관리 필요

□ 문의처

○ (사업 문의) 산업육성지원팀 김근이 선임(053-210-9613, kge1017@kiria.org)

○ (시스템 문의)

- 고객센터 : 070-4047-7287 / KIRIA 조승미 선임 : 053-210-9519

□ 구비 서류

※ 서류 접수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양식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3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지정양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지정양식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6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표지포함) 및 회계감사보고서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제출	2022, 2023년 각 1부
7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PDF 또는 JPG 파일
8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금형제작 분야 지원 시, PDF 또는 JPG 파일
9	참여의사 협약서	지정양식
10	민간부담금(현금) 출자협약서	지정양식
11	제작대행기관 참여확인서(사업자등록증 포함)	지정양식
12	제작대행기관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사전 원가검증용) ※ 제작단가, 수량, 가공비 등 상세 견적 및 내용 포함	각 1부
13	기타 증빙서류(우대사항 증빙서류) 및 기업 소개 자료 등	해당시 제출
14	발표 자료(PPT) 전자파일	발표평가 전전일까지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내 날인 또는 직인 확인 必

* 제출시점까지 2023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1년, 2022년 우선 제출

7. 추진 일정(안)

추진 절차	추진 주체	추진 일자
사업 공고	진흥원 홈페이지	'24. 2. 14(수)~3. 14(목) (30일간)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진흥원	'24. 2. 28(수)~3. 14(목)
서류검토	진흥원	'24 3. 19(화)
원가타당성 심의	평가위원회	'24 3. 21(목)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4. 3. 26(화)~28(목) (예정)
선정 대상 발표	진흥원 ⇨ 신청기업	'24. 4월 중
이의신청기간	진흥원	'24. 4월 중
협약 체결 및 사업비지급	진흥원 ⇔ 수행기업	'24. 4월 중
과제수행	수행기업	협약일 ~ '24. 11월(약 7개월)
중간점검	진흥원	'24. 8월 ~9월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24. 12월

* 일정은 신청 규모,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할 수 있음

8.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관련 법령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관련 규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기타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9. 문의처

전담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사업본부 산업육성지원팀

- 김근이 선임, 053-210-9613, kge1017@kiria.org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